##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69

발의연월일: 2020. 12. 30.

발 의 자:김경만·홍정민·김승원

김수흥 · 정일영 · 황운하

이병훈 • 양기대 • 문진석

김홍걸 · 양정숙 · 신정훈

윤건영 · 이광재 · 이규민

민형배・설 훈・강득구

이용빈 의원(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따라 재창업 중소 기업인의 발굴 및 교육, 규제 등 제도개선, 상담 지원, 재창업지원 시 설의 확충, 금융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창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위기가 급증하고 있어 재도전·재창업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재창업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의점검·평가 등 피드백이 필요하고, 수혜 중소기업 즉 재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 또한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야함.

아울러 재창업지원 정책이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재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위원장인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장관 소속의 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하는 등의 확대 개편이 바람직함.

이와 함께 재창업자에게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만 활용하고 있는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경영 실패자의 재창업 지원에 장애가 되는 부담 및 규제를 개선해야함.

이에 재창업지원 사업에 재창업지원 사업의 점검 및 평가, DB 구축 및 관리를 추가하고, 성실경영실패자의 부담 및 규제 해소, 창업정책 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재창업 환경 정비를 통하여 재창업이 활 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재창업지원 사업에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평가와 재창업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를 추가함(안 제4조의 3제2항).
-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인 이른바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 지원에 있어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6항).

다.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명칭을 창업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장관으로 격상하며, 심의 사항에 창업관련 규제 정비 등을 추가 하는 등 협의회의 명칭 및 기능을 개편함(안 제9조의2).

#### 법률 제 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 심의회"를 "제9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기준"을 "기준(성실경영실패자 판정기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7.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평가
- 8. 재창업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결과, 성실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이하 "성실경영실패자"라 한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 지원에 있어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의 내용 및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의2의 제목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창업지원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를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로,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창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한다.

- 1. 창업지원계획 및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창업 및 재창업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 정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창업 및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 4. 창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과의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창업 및 재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 2.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4.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5. 재창업관련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재창업 분야 전문가 중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성실경영 평가 중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창업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 심의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①
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	
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계획을 3년마다 <u>「중소기업기</u>	제9조의2에 따
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	른 창업지원심의위원회
<u>기업정책심의회</u> 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	<u>.</u>
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	제4조의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
영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	영 평가) ①
관은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재	
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	
기 위하여 재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재창업지원계	
획을 <u>수립할 수 있다</u> .	<u>수립하여야 한다</u>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②
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	
창업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7. (생략) ③ ~ ⑤ (생 략) <신 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 경영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 정책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의-----

- 1. ~ 6. (현행과 같음)
- 7.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 기 점검 및 평가
- 8. 재창업에 관한 종합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관리
- 9. (현행 제7호와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 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결과, 성실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이하 "성실경영실패자" 라 한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 지원 에 있어 장애가 되는 각종 부 담 및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의 내용 및 기준 등을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 (7) -----
- ----기준(성실 경영실패자 판정기준을 포함한 다)-----
- 제9조의2(창업지원정책협의회) ① 제9조의2(창업지원심의위원회) ①
  -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 ---창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기업부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신 설>

- 1. 창업지원계획 및 재창업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창업 및 재창업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 정비 및 제도 개 선에 관한 사항
- 3. 창업 및 재창업에 필요한 자 금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 4. 창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창업 지원기관과의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창업 및 재창업 활 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정책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2.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4.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 하는 사람
- 5. 재창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재창업 분야 전문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 하는 사람
-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
   과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
   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

   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